

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행정  
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1 월 14 일

여 수 시 장 2022.11.14  


여수시 조례 제1775호

붙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 1부.

##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 중 “제4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**를 “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 제53조에 따라”로, “행하는”을 “실시하는”으로 한다.

**제5조제1항제2호**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
**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”**을 “법 제163조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

**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**를 “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

**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”**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법인”으로 하고,

**제5조제2항** 중 “**제1항의 규정에 의한**” 을 “**제1항에 따른**” 으로 한다.

**제6조제1항** 중 “**법 제9조**” 를 “**법 제13조**” 로, “**법 제41조제3항**” 을 “**법제49조제3항**” 으로 한다.

**제9조제4항** 중 “**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**” 를 “**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**” 로 하고,  
**같은 조 제5항제2호** 중 “**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**” 을 “**이의신청**” 으로 한다.

**제11조제3항** 중 “**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**” 를 “**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**” 로 한다.

**제12조제1항** 중 “**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**” 를 “**제6조에 따라**” 로,  
“**제2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19조의**” 를 “**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**” 로 하고,

**같은 조 제2항** 중 “**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**” 를 “**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**” 로 한다.

**제13조** 중 “**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**” 를 “**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**” 로 한다.

**제14조** 중 “**기타의**” 를 “**그 밖에**” 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6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3조에 따라 ----- ----- <u>하는</u> ----- ----- -----.
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b>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.  1. (생 략)  2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 3.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4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	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b> ① ----- -----.  1. (현행과 같음)  2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-----법 제131조 와 제134조에 따른 ----- -----  3. -----법 제163조에 따른 ----- -----  4.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 
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전라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라남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의 중인으로 출석 또는 서류

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법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 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 
----- 법 제13조 -----  
----- 법 제49조제3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·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1. (생략)

2. 과태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별지 제2호 서식)

3.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상황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한다. (별지 제3호 서식)

### 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

## ① ~ ② (생 략)

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
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 
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  
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 
지급하되, 여수시여비조례의 국내여

법 제  
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  
라

⑤

### 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 이의신청 -----  
-----.

3. -----  
----- 비치  
한다. (- - - - -)

### 제11조(중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

###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비지급규정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.

-----.

제12조(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리출석 · 답변의 통지)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·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·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
제20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처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

제12조(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) ① 제6조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제2조부  
터 제11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-----.

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-----  
-----.

제13조(대리출석 · 답변의 통지) -----  
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그 밖 -----.

제20조(징계) -----  
----- 제16조에 따른 -----  
-----

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----- 제17조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